

2019년도 부산지방우정청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19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15일
부산지방우정청장

1. 선발 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
직급 (직종)	시험구분	선발예정인원 (총 21명)	시험과목(선택형 필기시험) 3과목
우정9급 우정서기보 (계리)	공개경쟁 채용시험	일반 : 19명 장애인 : 2명	한국사(상용한자 포함) 우편 및 금융상식(기초영어 포함) 컴퓨터일반

□ 모집단위(지역)별 구분모집표

(단위 : 명)

구분	모집단위(지역)	선발인원
부산지방우정청(일반)	부산지방우정청 관할 전지역(부산·울산·경남)	19
부산지방우정청(장애인)	부산지방우정청 관할 전지역(부산·울산·경남)	2

- *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8항에 따라 합격자는 당해 모집단위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 타 지역(기관)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.
- * 우정9급(계리)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후 부산지방우정청 관할 우체국 등에서 근무합니다.
- * 계리직종의 직무 내용은 「우체국 금융업무·회계업무·현업 창구업무·현금 수납」 등 각종 계산 관리업무 및 우편 통계 관련 업무 등입니다.

2. 시험방법

○ 제1차 시험: 선택형 필기시험

※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: 매 과목당 100점 만점, 객관식 4지 택일형 20문항

- 상용한자는 한국사에, 기초영어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 각 1~2문항씩 포함하여 출제
- 시험시간: 60분(문항당 1분 기준, 과목별 20분)

○ 제2차 시험: 면접시험

3. 응시자격

가. 응시 결격 사유: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거나,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(판단기준일: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)

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)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

-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.

나. 응시연령: 18세 이상(2001. 12. 31. 이전 출생자)

다. 학력 및 경력: 제한 없음

라.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-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장애인은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 (단, 중복 접수는 할 수 없음)
-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의 증빙서류(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, 국가유공자증)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마.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안내

- 응시자는 공고일('19. 7. 15.) 현재 '부산지방우정청 관할지역(부산광역시·울산광역시·경상남도)'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※ 향후 채용시험이 진행될 경우,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
4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시험명	접수기간	구분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자	합격자 발표
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개경쟁채용시험	'19. 8. 6.(화) ~ 8. 9.(금) ※ 접수 취소 8. 12(월) 21:00까지	필기시험	'19. 10. 7.(월)	'19. 10. 19.(토)	'19. 11. 19.(화)
		면접시험	'19. 11. 19.(화)	'19. 12. 21.(토)	'19. 12. 27.(금)

- 모든 시험 일정은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(<http://www.koreapost.go.kr/bs/>)에 공고합니다.
-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 일에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사이트에 게시하며,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합격을 통지합니다.
- 필기시험 성적 확인 방법 ·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 안내하며,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5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방법 및 시간

- 접수방법 :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(<http://www.koreapost.go.kr/bs/>) ‘2019년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개경쟁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바로가기’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접수시간 :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:00~21:00
- 응시수수료: 5,000원
 - ※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(휴대폰 결제 · 카드 결제 · 계좌이체 비용) 발생
 - ※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,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로 처리됩니다.
 - 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원서 접수 마감 후,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료를 환불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저소득층 대상 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.(별도의 처리비용은 미반환)
- 사진등록 :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사진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(규격) 반명함판 증명사진, 크기 3.5cm×4.5cm(140×180pixel), 파일용량 100Kbyte미만, 파일형식 JPG/GIF
 - ※ 배경이 있는 사진, 스냅사진,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,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, 모자,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, 얼굴이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사용 불가

나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-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내용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장애유형(시각·지체·뇌병변)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, 구비서류 등은 붙임의 안내문을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-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
-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,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.
※ (취소 기간) ’ 19. 8. 12.(월) 21:00까지
- 원서접수 시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
6. 필기(제1차)시험 응시 장소

모집단위(지역)	제1차(필기)시험 응시 지역
부산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(일반, 장애인)	부산광역시

7. 가산점 적용

가.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비율표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	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
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	

※ 국가직공무원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개정(2015. 5. 6.)에 따라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.

나. 취업지원대상자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을 가산합니다.

※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
※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

※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(☎1577-0606) 등에 확인

다. 의사상자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,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(5% 또는 3%)을 가산하며,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.
 - ※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
 - ※ 선발 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
 - ※ 의사상자 등 등록 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(☎044-202-3258)에 확인

라.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.
 - ※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(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)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8. 기타 사항

- 가. 필기시험에서 과락(40점 미만)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- 다.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나라일터(<http://gojobs.go.kr>)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라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재공고 또는 통지합니다.
- 마. 2020년 이후, 「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개경쟁채용시험」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바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(☎051-559-323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